

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3. 12. .
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여비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회 업무를 추진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7조제2항(수당과 여비지급)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
여비지급 규정 수정.

구미시의회전문기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의회전문기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2항(수당과 여비지급)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명 : <u>구미시의회전문 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</u>	제명 : <u>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</u>	제명 :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위촉절차 및 위촉기간) ① ~ ② (생략) ③ 위촉기간은 <u>1월 이내</u> 에 한한다. 다만,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 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.	제3조(위촉절차 및 위촉기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_ _ _ _ _ <u>1년 이내</u> 로 한다. _	제3조(위촉절차 및 위촉기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수당과 여비지급) ① (생략) ② <u>수당과 여비는 자 문기간이 끝나는 날 지급한다.</u> 다만, 그 지 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.	제7조(수당과 여비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,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 할 수 있다.</u> _ _ _ _ _	제7조(수당과 여비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 한다. _ _ _ _ _

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1월 이내에 한한다.”를 “1년 이내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수당과 여비는 자문기간이 끝나는 날 지급한다.”를 “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,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